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49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송옥주 · 윤준병 · 임미애
남인순 · 이상식 · 이개호
이수진 · 강준현 · 한정애
박균택 · 서미화 · 황명선
전종덕 · 오세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일수 및 폭염특보 발령 횟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의 온열질환(열사병·열탈진·열경련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장시간 폭염 노출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이 재해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중 옥외 농어업작업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폭염 시

기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식수·휴식시설 지원, 온열질환 예방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예방·치료 양면에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온열질환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10호).
- 나. 폭염특보 발령 기간 중 옥외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함(제8조제1항제2호다목).
- 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온열질환 등 폭염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16조제2항제5호).
- 라. 농어업작업재해 예방사업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시설의 보급 및 지원을 포함함(제16조의3제1항제3호의2).
- 마. 폭염특보 발령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업 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식수·휴식시설 지원, 예방수칙 홍보·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제16조의4).
- 바.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제16조의5).
- 사. 치료비 지원 신청·심사·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온열질환”이란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신체의 체온조절기능 이상으로 인한 질환을 말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중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를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이하 “폭염특보”라 한다)가 발령된 기간 중 옥외에서 농어업작업을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다가”로, “질병”을 “온열질환”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16조제2항제5호 중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온열질환 등 폭염으로 인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의3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그늘막, 개인용 냉각장비 등 폭염 대비 장비·시설의 보급 및 지원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폭염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무더운 시간대의 작업시간 조정 권고
2. 그늘막, 식수, 휴식시설 등의 설치 지원
3.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온열질환 치료비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작업 중 온열질환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금액,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부당지급금의 환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온열질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 <u>온열질환</u> ”이란 <u>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신체의 체온조절기능 이상으로 인한 질환을 말한다.</u>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①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한다. 1. (생 략) 2.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 가. · 나. (생 략) 다. <u>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u>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u>기상법</u> 」 제13조에 따른 <u>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이하 “폭염특보”라 한다)가 발령된 기간 중</u>

<u><신 설></u> ② . ③ (생 략)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u>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u><신 설></u> ③ ~ ⑤ (생 략)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u>옥외에서 농어업작업을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다가-----온열질환</u> <u>라.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온열질환 등 폭염으로 인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관한-----</u> 6. <u>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그</u>
---	--

4.·5.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늘막, 개인용 냉각장비 등 폭
염 대비 장비·시설의 보급
및 지원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폭염 시 농어업작업안

전재해 예방조치)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농
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온
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무더운 시간대의 작업시간
조정 권고

2. 그늘막, 식수, 휴식시설 등의
설치 지원

3.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
·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온열질환 치료비의 지

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u><신 설></u>	<u>는 농어업작업 중 온열질환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u> <u>③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금액,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u>제16조의6(부당지급금의 환수) ①</u>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u>
---------------------------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
람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
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